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4. 22 선고 2021가단12801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2. 4. 1.

판 결 선 고 2022. 4. 22.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16,195,462원 및 그 중 5,163,726원에 대하여 2021. 6. 1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.7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4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들 사이에 2019. 6. 14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
나. 피고 C는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가. 피고 B에 대하여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. 피고 C에 대하여

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 홍주현

별지